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129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유장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7.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47,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2)

판사 이정덕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C는 2016. 12. 15. 소외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인데, 2017. 7. 3.경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채권액 113,847,010원)을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자이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한편, D은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2억 원의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C소유의 부동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외 2필지, 이하 'F부동산'이라 함)에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이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D은 총 4,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1억 6천만원의 잔존채권을 2017. 11. 3. D의 대표인 G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C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함으로써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1. 7. 23. 소외 G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1억 6천만 원을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

원고는 2021. 7. 23. G으로부터 D의 C에 대한 2016. 12. 15.자 대여금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C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는 2017. 7. 3. 피고에게 E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 113,847,010원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C는 'F부동산' 외에 달리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약 7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C 소유했던 F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H의 배당표를 보면, 수많은 채권자들 중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은 채권자들의 채권액만 약 57억 6,600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 중 동 부동산에 대한 동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채권자의 채권액은 약 1,066,655,762원(가압류권자 ① 주식회사 I 36,842,540원, ② J 주식회사 248,081,482원, ③ K 주식회사 375,794,141원, ④ 중소기업은행 105,937,599원, / 근저당권자 D 2억원, 주식회사 L 1억원)만 합하더라도 채무액은 6,832,655,762원입니다.

이처럼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4. 수익자의 악의

C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5. 반환범위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2017. 8. 31. E로부터 113,847,01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써 113,847,01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C와 피고의 채권양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는 주문 제2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된 가액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이행의무는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위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성질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2021. 9. 3.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답변서 제출기한으로부터 다시 30일 이상 경과한 2021. 11. 11. 제1회 변론기일까지도 답변서, 불출석 사유서를 비롯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11. 15.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자백간주된 상태이므로, 변론재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21. 11. 22.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